

2024년 10.16 재·보궐선거 후보자 추천신청 공모

당규 제10호 공직선거후보자추천및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회규정 제28조(공모)에 따라, 아래와 같이 공직선거 후보자를 공모함

- 아 래 -

1. 공모대상지역 : 전남 영광군수
2. 신청자격 : 공직선거법상의 피선거권이 있고, 신청일 현재 권리당원
 - 특별당규 제22대국회의원선거후보자선출규정 제12조1항에 해당될 경우 신청무효처리
 - 당 실시 교육연수 16시간 이수자 (22년 6월 1일부터 현재까지 기간 중)
3. 접수기간 : 24.8.9(금) 17:00 ~ 24.8.14(수) 17:00 / 5일간
4. 신청방법 : 이메일 접수(minjoo2010@gmail.com)
 - ※모든 서류는 PDF로 전환하여 하나의 파일로 제출 요망
5. 심사비 : 100만원
 - 접수 계좌 : 농협 036-01-131970, 예금주 더불어민주당 / 반드시 후보자 명의 입금
 - ※ 신청일 기준 20대 청년 접수비 면제 / 만 30대 청년, 중증장애인, 만 65세 이상 1/2 감액, 단, 현재 선출직공직자는 감액 대상에서 제외
6. 신청자 접수 서류 목록

호	접수 서류	비고
1	후보자 추천신청서 1부	<별지 제1호>
2	서약서 1부	<별지 제2호>
3	매니페스토실천계획서(지방자치단체의 장) 1부	<별도 서식 1호>
4	주민등록등본 1부, 가족관계증명서 1부	관공서 발급
5	당적증명서 1부 ※ https://membership.theminjoo.kr/myPage (개인정보 인증 후 당원정보 페이지에서 관련 서류 발급)	당 홈페이지 발급
6	당비납부확인서 1부 (최근2년간) ※ https://membership.theminjoo.kr/myPage (개인정보 인증 후 당원정보 페이지에서 관련 서류 발급)	당 홈페이지 발급
7	교육연수 이수확인서 1부	당 홈페이지 발급

호	접수 서류	비고
	※ https://theminjoo.kr/academy	
8	개인별 기록카드 1부	<별지 제4호>
9	본인소개서 1부	<별지 제5호>
10	후보자등록신청비 납부증명서 1부	이체 확인증
11	최종학력증명서 1부	관공서 발급
12	병적증명서(본인, 배우자, 직계비속) 1부	관공서 발급
13	재산신고서 1부 (본인, 배우자, 직계존비속)	<별지 제7호>
14	최근 5년간 세금관계 서류(본인, 배우자, 직계존비속) - 소득세: 소득금액증명원 납부내역증명서, 납세사실증명서, 납세증명원(구세안납증명원) - 재산세: 지방세 납세증명서,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(재산세 항목) * 납부내역이 없는 경우 미과세증명 발급	<별도 서식 2호>
15	공직선거용 범죄수사경력회보서, 범죄수사경력 확인 및 소명서 1부	<별도 서식 3호>
16	① 부동산보유현황 관련 증명서류(본인, 배우자, 직계존비속) - 부동산소유현황 - 다주택사유 및 처분계획서 - 부동산보유현황 증명서(정부발급, 인터넷등기소) ② 가상자산보유현황 관련 증명서류(본인, 배우자, 직계존비속) - 가상자산 소유현황 * 가상자산소유 시 잔액증명서 제출 必 (가상자산사업자 발행) ③ 공직선거후보자 검증 신청 서약서 ④ 공직선거후보자 민사소송 관련 현황	<별도 서식 4호-8호>
17	칼라 명함판사진 전산(jpg) 파일	사진 파일

※ 교육연수이수확인서는 더불어민주당 홈페이지 민주e아카데미→로그인(회원가입)→마이페이지→이수증출력→교육이수내역(이수일자 2022년 6월 1일 이후 기간설정)→전체이수증 출력 (성평등교육을 포함하여 16시간 이상 필수)

7. 유의사항

- 더불어민주당의 공직선거후보자로 추천받고자 하는 자는 공직선거법, 당헌 또는 윤리규범에 위반되지 아니하여야 하며, 이 규정상의 피선거권의 있고, 신청일 현재 권리당원으로서 당적을 보유하여야 함
- 더불어민주당 2024년 하반기 재보궐선거 후보자 추천신청 공모 시, 예비후보자 자격심사가 선행되며 예비후보자 자격심사 부적격 시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자로 등록할 수 없음
- 서류는 PDF로 변환하여 하나의 파일로 제출해야 하며, 제출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
- 접수서류 중에 기재내용 일부를 고의로 누락했거나 허위사실을 기재한 경우 그 신청을 무효

로 함

- 더불어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에서는 별도의 서류제출이나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, 지정한 기일 내에 서류 제출이나 보완을 하지 않을 경우 자격박탈 됨
- 여론조사 등을 실시할 경우 개별적으로 증빙서류를 요구할 수 있음
- 당헌 제96조에 따라, 해당 선거구 중 일부가 전략공천선거구로 선정될 수 있음
- 당헌 제4조제3항제2호에 따라 공천관리위원회의 심사결과 발표 이후 탈당 후 출마할 경우 영구복당불허 대상임

※ 문의 : 10.16 재·보궐선거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(02-2630-0024,0030,0021)

2024.08.09.

10.16재보궐선거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위원장 (직인생략)